

신탁계약서 변경비교표

□ 펀드명 : 트러스트장기성장30증권투자신탁[채권혼합]

변경 사유	변경 전	변경 후
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	제4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) ①(생 략) ②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,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,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 업무,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업무 등을 수행한다. ③(생 략)	제4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) ①(현행과 같음) ②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,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,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 업무,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, <u>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·관리 중인 집합투자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</u> 등의 확인업무 등을 수행한다. ③(현행과 같음)
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	제13조(자산운용지시 등) ①(생 략) 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·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<u>으로</u>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③ ~ ④ (생 략)	제13조(자산운용지시 등) ①(현행과 같음) 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·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<u>한도로 하여</u>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③ ~ ④ (현행과 같음)
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	제21조(운용행위 감시 의무 등) ①(생 략) ②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<u>제3영업일</u> 이내에	제21조(운용행위 감시 의무 등) ①(현행과 같음) ②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<u>3영업일</u> 이내에

	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법 시행령제269조제2항이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. ③ ~ ⑤(생략)	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법 시행령제269조제2항이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. ③ ~ ⑤(현행과 같음)
미국 국적의 비거주자에 대한 판매 제한 삭제	제22조의 2 (미국 국적의 비거주자에 대한 판매) 이 투자신탁의 판매회사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로서 미국 국적인 자에게 이 수익증권을 판매할 수 없다.	<삭제>
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	제23조(판매가격) ①(생략)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5시 30분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<u>제3영업일</u>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. ③(생략)	제23조(판매가격) ①(생략)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5시 30분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<u>3영업일</u>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. ③(현행과 같음)
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	제25조(환매가격 및 환매방법) ①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<u>제2영업일</u>(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<u>제3영업일</u>)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. 다만,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제2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. ②제24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(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)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<u>제4</u>	제25조(환매가격 및 환매방법) ①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<u>2영업일</u>(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<u>3영업일</u>)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. 다만,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제2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. ②제24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(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)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<u>4영</u>

	<u>영업일</u>(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 청구시 <u>제4영업일</u>)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 ③ ~ ④ (생 략)	<u>영업일</u>(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 청구시 <u>4영업일</u>)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 ③ ~ ④ (현행과 같음)
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	제29조(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) ①집합투자업자는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. 기준가격[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]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·게시일 전날의 <u>대차대조표</u>상에 계상된 투자신탁[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]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(이하 "순자산총액"이라 한다)을 그 공고·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[당해 종류 수익증권]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, 1,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. ② ~ ③(생 략)	제29조(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) ①집합투자업자는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. 기준가격[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]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·게시일 전날의 <u>재무상태표</u>상에 계상된 투자신탁[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]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(이하 "순자산총액"이라 한다)을 그 공고·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[당해 종류 수익증권]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, 1,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. ② ~ ③(현행과 같음)
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	제31조(투자신탁의 회계감사)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(이하 “결산서류”라 한다)를 작성하여야 한다. 1. <u>대차대조표</u> 2. ~ 3. (생 략) ②(생 략)	제31조(투자신탁의 회계감사)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(이하 “결산서류”라 한다)를 작성하여야 한다. 1. <u>재무상태표</u> 2. ~ 3. (현행과 같음) ②(현행과 같음)
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	제38조(보수) ①(생 략) ②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(이하 “보수계산기간”이라 한다)은 최초 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<u>대차대조표</u>상에 계상하고 다	제38조(보수) ①(현행과 같음) ②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(이하 “보수계산기간”이라 한다)은 최초 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<u>재무상태표</u>상에 계상하고 다

	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 ③(생 략)	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 ③(현행과 같음)
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	제43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 ① ~ ④ (생 략) ⑤ 제4항에 따른 손실 등의 보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수익자총회 결의일로부터 <u>제5영업일</u> 이내에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 1. ~ 2. (생 략) ⑥ (생 략)	제43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제4항에 따른 손실 등의 보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수익자총회 결의일로부터 <u>5영업일</u> 이내에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 1. ~ 2. (현행과 같음) ⑥ (현행과 같음)
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	제44조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 ①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1. ~ 2. (생 략) 3.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.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	제44조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 ①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1. ~ 2. (현행과 같음) 3.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<u>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)</u>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.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 <u>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)</u>이 지난 후 1개월간 계

		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② ~ ④(현행과 같음)
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	제47조(공시 및 보고서 등)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(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한다)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. 1. ~ 7. (생략) 8.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9. 투자신탁이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10. (생략) ② ~ ⑩ (생략)	제47조(공시 및 보고서 등)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(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한다)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. 1. ~ 7. (현행과 같음) 8.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<u>으로서</u>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(<u>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</u>)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9. 투자신탁이 설정하고 1년(<u>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</u>)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10. (현행과 같음) ② ~ ⑩ (현행과 같음)
	<신 설>	<u>부 칙</u> 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22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.